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건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32
----------	------

2013년 7월 10일
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2013년 5월 7일
- 나. 발 의 자 : 이종필 의원 외 11명
- 다. 회부일자 : 2013년 5월 9일
- 라. 상정일자 : 제247회 정례회 제2차 건설위원회
(2013년 7월 2일 상정, 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종필 의원)

○ 주 문

방송통신사업자가 옥외회선 철거 의무를 일부 해태함에 따른 폐선 방치 실태를 시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의무 불이행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을 건의함.

○ 제안이유

-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18조(설치 및 철거방법 등)에 근거하여 서비스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이 고시하는 기간내에 옥외회선을 철거해야 함.
- 그러나 방송통신사업자가 일부 옥외회선에 대한 철거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경우 21,045건의 폐선(2013년 1월부터 2월까지 기준)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임.
- 서울특별시와 각 자치구에 접수된 ‘통신·방송 가공선 등에 대한 민원’ 이 연평균 6,000여건에 이르고 있는 바, 이 중 40~50%가 방치된 폐선에 기인한 것임.
- 그러나 방송통신사업자의 옥외회선 철거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 근거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폐선방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및 철거를 위한 행정지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태임.
- 이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방송통신사업자의 옥외회선 관리 및 철거의무를 명시하고, 폐선철거 의무 불이행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함.

○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3. 검토보고요지(수석전문위원 김태호)

본 건의안은 2013년 5월 7일 이종필(도시안전위원회, 새누리당)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것으로, 방송통신사업자는 현행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8조(설치 및 철거방법 등)에 근거하여 서비스이용계약이 해지되면 옥외회선을 철거하여야 하나 철거의무를 해태하여 폐선이 그대로 방치됨에 따라 도시미관과 도시안전이 위협받는 문제가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관련의무 불이행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을 건의하는 것임.

- 중앙정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기관(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이 참석한 가운데 2012. 11. 23일 제1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을 의결하였음.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공중선 정비 추진협의회’가 구성되고 2013. 1월부터 2월까지 대대적인 ‘공중선 실태조사’가 이루어짐.
- 공중선의 철거와 관련하여 현행 관련 법령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등이 있음.

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기술기준), 제31조(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제48조(과태료) 등 현재도 포괄적으로 폐선 등에 대한 처분규정이 있으나, 사실상 미래창조과학부(종전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전파관리소 등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직무태만사례이며, 제도적으로 불이익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기술기준) ① 방송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전파연구소 고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1조(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설치된 방송통신설비가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8조(설치 및 철거방법 등) ② 구내통신선로설비의 국선 등 옥외회선은 지하로 인입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구내에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제4조제2항제2호의 분계점과 사업자가 이용하는 인입맨홀·핸드홀 또는 인입주까지 지하인입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하로 인입하여야 한다.

④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 설치된 후 배선의 교체 및 증설 시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전파연구소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제2항 단서에 따라 설치된 옥외회선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의 일부만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 구체적인 설치 및 철거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6조(국선의 인입)

④ 국선을 가공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표준도에 준하여 설치하며, 사업자는 국선을 인입배관으로 인입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후 30일 이내에 인입선로를 철거하여야 한다

- 서울시 역시 그동안 공중선 정비를 위한 다양한 노력(서울시 공중선 정비계획, 11.8.30일, 도로행정-112598)을 기울여왔으나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았음.

[표] 서울시 차원 대책 주요내용 및 시행결과

주요내용	추진실적
① 자치구별 가공선 정비협의체 구성	- 협의체 구성 : 19개 구청 - 합동점검 : 189회 - 회의개최 : 175회
② 불량가공선 모니터 요원 예산 편성 및 집행	- 예산 : 42,000천원 - 집행 : 33,480천원
③ 자치구별 인센티브 사업 시행	‘11년도 인센티브 사업 시행 자치구별 평가지표에 의거 평가실시
④ 시민여론 조성으로 사업자 인식전환 유도	보도자료 배포 4회(서울시) 자치구별 보도자료 12개구(서초구 등)
⑤ 시단위 정비협의체 구성 및 협약 체결	- 사업자 비협조로 미구성, 미체결 ※2013년 1월중 구성 및 협약체결 예정
⑥ 전선 점용료 부과 신설(도로법시행령) 추진	- 국토해양부에 법 개정 건의 : 총4회(’09~’12년) - 공중선 점용료 부과관련 도로법시행령 입법예고(’12.6.24) - 추진결과 · 2년간 입법유예 (지경부·방통위 주관, 사업자가 2년간 자율정비하고 그 결과로 입법 재논의 결정)

[표] 시행상 문제점

- 사업자들의 인식부족으로 합동정비가 어려움
- 한전, KT는 정비협업체 운영에 협조적이나 케이블TV 등의 통신업체는 본사의 지시가 없다는 사유로 비협조적임.
- 민원등에 의해 정비 요청시 소극적이고 정비 결과 미통보
- 전파관리소 등에 통보시 행정처분 등 비협조
- 공중선 정비시, 폐선 등이 대부분이나 정보부족으로 현황 파악 곤란

- 2013. 1. 10일 서울시가 주최한 공중선 정비를 위한 자치구 담당 팀장 회의 결과에 따르면, KT가 특히 소극적이어서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하고 통신사업자들의 자율정비 의지가 부족하므로 보다 강력한 법 개정 추진이 요망되며, 동시에 정비물량의 조사나 가이드라인의 준수 등에 있어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개설도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중앙정부가 공중선 정비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본 건의안과 같이 관련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건의문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8조(설치 및 철거방법 등)에 근거하여 서비스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이 고시하는 기간내에 옥외회선을 철거해야 한다.

그러나 방송통신사업자가 일부 옥외회선에 대한 철거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경우 21,045건의 폐선(2013년 1월부터 2월까지 기준)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서울특별시와 각 자치구에 접수된 통신·방송 가공선 등에 대한 민원이 연평균 6,000여건에 이르고 있는 바, 이 중 40~50%가 방치된 폐선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사업자의 옥외회선 철거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 근거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폐선방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및 철거를 위한 행정지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태이다.

이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방송통신사업자의 옥외회선 관리 및 철거의무를 명시하고, 폐선철거 의무 불이행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한다.

2013. 6.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